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김영오

전화 054-250-4398 / 팩스 054-250-4348

보도자료

2021. 6. 10.(목)

제목

13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집단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여중생 등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☑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 (제11조 제2항 제3호)

※ 2021. 6. 9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김영오)는 13세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조건만남(성매매)을 강요하고,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요행위등)죄 등 범행한 여중생 3명 및 남성 가담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, 여중생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보복 목적 등 사안의 전모를 밝혀내어 가중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, 명백히 드러난 피고인들의 보복상해, 중감금, 강제추행 등 추가 범행을 인지하여 기소하였음
- 또한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, 주거환경개선비, 심리상담 등 지원 의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음

1) 이하 ‘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죄’라고 함

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(20세, 무직) 등 7명

※ 남성 가담자 3명 및 여중생 3명은 구속, 여중생 1명은 불구속(별건 범죄로 소년원 위탁중)

○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B○○은 '21. 4.말경 G○○으로 인해 오토바이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자, G○○, H○○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언급하며 '조건만남을 할 사람들을 구해보라'는 취지로 말하여 D○○, G○○, H○○으로 하여금 피해자 甲(여, 13세)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도록 하여 **【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교사】**

- 피고인 D○○, E○○, F○○, G○○는 피해자 甲에 대한 성매매 강요 범행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자, '21. 5. 7.경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, 몸 등을 수회 때리고, 피고인 A○○, C○○가 가세하여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고,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**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, 특수상해, 중감금】**

※ 자세한 내용은 「[별첨]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」 참조

II

수사 경과

- '21. 5. 7. 112신고(피해자甲 폭행 영상 전송받은 남학생 친구 신고)
- '21. 5. 16. ~ 17. 포항북부서, B○○ 및 C○○ 긴급체포
- '21. 5. 18. ~ 20. A○○, B○○, C○○, D○○, E○○, F○○ 사경 신청 구속영장 청구 및 전원 발부

- '21. 5. 25. 포항북부서, 피고인들 구속 송치
- '21. 5. 25. ~ 6. 9. 피고인들 조사 및 추가 범죄 인지
- '21. 6. 10. 피고인들 기소 [6명 구속 기소, 1명 불구속 기소]

III

수사 결과

- 피고인들이 13세 여중생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,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 등으로 기소하였음
 - ※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함
 - 한편, 검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피고인들의 여죄를 추가 인지하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를 특수상해로도 추가 의율하는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

검찰 추가 인지 사항

- ① A○○, C○○이 피해자 甲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피해자가 성매매 강요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'보복 목적'임을 입증하여 가중처벌 규정 적용하고 보복상해등죄 추가 인지
 - ※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(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)
- ② A○○, C○○의 피해자 乙, 丙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게 하여 가둔 '감금 행위' 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에 착안하여 중감금죄 추가 인지
 - ※ 형법 제277조 제1항(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)
- ③ F○○이 피해자 甲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후 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제추행)죄 추가 인지
 - ※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(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
-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, 주거환경 개선비, 심리상담 등 지원 의뢰하여 피해자지원 절차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

IV

향후 계획

-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
- 소년 범죄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'성'을 상품화 하는 행위,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폭력행위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음 ☐

[별첨]

[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]

연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(죄명)
1	피고인 A○○ (20세, 무직, <u>구속</u>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○○과 '21. 5. 7.경 피해자 乙(남, 15세), 丙(남, 14세)을 컨테이너 창고에 가두고, 지갑, 옷 등을 갈취하고, 때리는 등 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, 중감금】 ○ C○○, D○○, E○○, F○○, G○○, H○○과 '21. 5. 7.경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甲을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아파트 공터, 저수지 부근 공터 등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지지고, 나무 막대기,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, 특수상해 및 중감금】 ○ E○○, F○○에게 '피해자 甲의 얼굴 붓기가 빠질 때까지 데리고 있어라'는 취지로 지시하고, A○○의 지시에 따라 E○○, F○○은 '21. 5. 8.경 피해자 甲을 인근 공원 여자화장실에 감금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교사】
2	피고인 B○○ (19세, <u>배달업, 구속</u>)	<p>(피해자 甲에 대한 범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. 4. 말경 G○○으로 인하여 오토바이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자, G○○, H○○(여, 13세, 촉법소년)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언급하며 '조건 만남을 할 사람들을 구해보라'는 취지로 말하여 D○○, G○○, H○○으로 하여금 피해자 甲(여, 13세)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도록 하여 【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교사】 <p>(피해자 G○○에 대한 범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. 4. 말경 피해자 G○○으로 인해 발생한 '오토바이 수리비'를 언급하며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여, G○○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받아 【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】 <p>(피해자 H○○에 대한 범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○○과 '21. 5.경 피해자 H○○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여 【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】 ○ '21. 5. 초순경 G○○에게 H○○의 남자친구인 C○○의 채무를 언급하며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도록 지시하고, 위 B○○의 지시에 따라 G○○은 H○○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여 【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교사】
3	피고인 C○○ (17세,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○○과 '21. 5. 7.경 피해자 乙(남, 15세), 丙(남, 14세)을 컨테이너 창고에 가두고, 지갑, 옷 등을 갈취하고, 때리는 등 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, 중감금】

	<p>학생, <u>구속</u>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B○○과 '21. 5.경 피해자 H○○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여 【청소년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】 ○ A○○, D○○, E○○, F○○, G○○, H○○과 '21. 5. 7.경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甲을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아파트 공터, 저수지 부근 공터 등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지지고, 나무 막대기,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, 특수상해 및 중감금】
<p>4</p>	<p>피고인 D○○ (14세, 중학생, <u>구속</u>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B○○의 지시에 따라 G○○, H○○과 공모하여 '21. 4. 27.경 피해자 甲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【청소년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】 ○ 피해자 甲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자, E○○, F○○, G○○, H○○과 '21. 5. 7.경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, 몸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, 이후 A○○, C○○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아파트 공터, 저수지 부근 공터 등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고, 나무 막대기,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, 특수상해 및 중감금】
<p>5</p>	<p>피고인 E○○ (14세, 중학생, <u>구속</u>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자 甲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자, D○○, F○○, G○○, H○○과 '21. 5. 7.경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, 몸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, 이후 A○○, C○○가 가세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아파트 공터, 저수지 부근 공터 등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고, 나무 막대기,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, 특수상해 및 중감금】 ○ A○○는 E○○, F○○에게 '피해자 甲의 얼굴 붓기가 빠질 때까지 데리고 있어라'는 취지로 지시하고, A○○의 지시에 따라 E○○, F○○는 '21. 5. 8.경 피해자 甲을 인근 공원 여자화장실에 감금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】
<p>6</p>	<p>피고인 F○○ (14세, 중학생, <u>구속</u>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자 甲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자, D○○, E○○, G○○, H○○과 '21. 5. 7.경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, 몸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, 이후 A○○, C○○가 가세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아파트 공터, 저수지 부근 공터 등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고, 나무 막대기,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, 특수상해 및 중감금】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○○는 E○○, F○○에게 ‘피해자 甲의 얼굴 붓기가 빠질 때까지 데리고 있어라’는 취지로 지시하고, A○○의 지시에 따라 E○○, F○○는 ‘21. 5. 8.경 피해자 甲을 인근 공원 여자화장실에 감금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】 ○ ‘21. 5. 7.경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甲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【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제추행)】
7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피고인 G○○ (14세, 중학생, 불구속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B○○의 지시에 따라 D○○, H○○과 ‘21. 4. 27.경 피해자 甲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【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】 ○ 피해자 甲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자, D○○, E○○, F○○, H○○과 ‘21. 5. 7.경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, 몸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, 이후 A○○, C○○가 가세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아파트 공터, 저수지 부근 공터 등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고, 나무 막대기,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, 특수상해 및 중감금】 ○ B○○은 ‘21. 5. 초순경 G○○에게 H○○의 남자친구인 C○○의 채무를 언급하며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도록 지시하고, 위 B○○의 지시에 따라 G○○은 H○○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여 【청소년성보호법위반(강요행위등)】